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64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2,792,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277,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 B 2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하고, 2015. 8. 3.부터 2018. 2. 23.까지 취득세 39,536,260원, 지방교육세 3,953,600원, 농어촌특별세 1,976,780원, 합계 45,466,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9. 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은 당초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다락방 면적 87.78㎡를 포함하여 360.42㎡로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 일부를 폐쇄하고 피고에게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9. 19.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 요건에 제외되도록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 면적 일부를 폐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하여, "다락방 모서리 부분 면적은 높이가 낮아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해당 부분(다락방 감소면적 47.88㎡, 이하 '쟁점 다락'이라 한다)이 경량기포콘크리트 건축재(ALC)로 반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실제 건물 연면적(주차장, 발코니 확장 면적 제외)이 312.54㎡이므로, 고급주택(주거용 면적 331㎡ 초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복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272,958,9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42,850원, 지방교육세 436,730원, 농어촌특별세 545,910원, 합계 8,625,49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가 2018. 10. 4. 원고가 쟁점 다락 폐쇄 후 재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출장한 결과, 원고가 쟁점 다락을 전체 주거용(다락입구쪽 응접세트, 반대쪽 물건 적재: 각종 생활용품 및 박스)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연면적이 360.42㎡이므로, 고급주택(주거용 면적 331㎡ 초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8. 10. 8.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출장하여 원고가 쟁점 다락을 다시 폐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곰팡이 등의 문제로 폐쇄하였던 쟁점 다락을 환기 및 통풍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4. 출장시 공사중이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8. 10. 17. 과세예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4. 불채택되었다.

사. 피고는 2019. 1. 10.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아래 <표>(단위: 원, 괄호 안의 가산세 포함된 금액)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토지분	96,250,220 (가산세 10,043,810원)	88,212,660 (가산세 9,843,190)	8,037,560 (가산세 200,620)
주택분	26,818,960 (가산세 2,798,580원)	24,579,390 (가산세 2,742,680원)	2,239,570 (가산세 55,900)
계	123,069,180	112,792,050	10,277,130

아.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2. 기각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쟁점 다락에서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하여, 이를 수선하고자 폐쇄하였던 쟁점 다락의 벽면을 철거하고 수선공사를 마친 다음, 공사가 끝난 2018. 10. 7. 다시 쟁점 다락의 폐쇄 벽면을 재시공하였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쟁점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추측에만 의존하여 한 처분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쟁점 다락이 건물 전체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2016. 9. 19.자 현장출장 복명사항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9. 19.경 이 사건 건물이 쟁점다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의무를 지체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2018. 10. 4. 출장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및 외부에 공사 중임을 확인할 만한 시설이나 자재가 전혀 없었던 점, ㉡ 위 출장 당시 쟁점 다락에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각종 생활물품 등이 놓여 있었던 점, ㉢ 원고가 2018. 10. 16. 본인 통장에 '다락내장형틀목수'라고 표시하면서 C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고, 2018. 11. 2. D 대표 E에게 폐기물처리운반비 150,000원을 입금한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 다락을 누수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개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입금은 모두 2018. 10. 4. 출장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실제 연면적이 360.42㎡이므로 고급주택(주거용 면적 331㎡ 초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2016. 9. 19. 출장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당시 쟁점 다락 부분이 경량기포콘크리트 건축재(ALC)로 반영구적으로 폐쇄된 상태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고, 쟁점 다락이 다시 개방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2016. 9. 19. 출장 당시 원고에게 쟁점 다락의 사용 현황이 변동되어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는다는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5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본인의 책임 아래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등에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쟁점 다락을 폐쇄하고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하였으므로 폐쇄된 쟁점 다락을 개방하여 사용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어떠한 신뢰를 부였다고 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연경

판사 민수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끝.